

참고: 안내 편지는 하단에 PDF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Department of Justice

즉시 공개

CRT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202) 514-2007

WWW.JUSTICE.GOV

TDD (202) 514-1888

미국 법무부, 주 법원에 언어 편의 제공 의무 안내 편지 발송

워싱턴 – 오늘 법무부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법원은 제한적 영어 구사자를(LEP) 위해 통역, 번역 및 기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편지를 주 법원 대법원장 및 관리자에게 발송했다. 이번 달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연방 기관은 1964년 시민권법 Title VI에 의거, 제한적 영어 구사자를 위한 의미있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 13166](#)이 발효된 지 10년이 된다.

본 편지는 1964년 시민권법 Title VI, 범죄 규제 및 가두 안전법과 해당 법안의 도입 규정에 준거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자 역시 주 법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이 편지는 적용 가능한 시민권법 및 대법원 판례와 언어 서비스가 보장되는 실례 및 안내 사항을 포함한다.

본 편지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법원은 적용 가능한 시민권법에 준거하여 모든 민사, 형사, 행정 심의에 있어 제한적 영어 구사자를 위해 의미있는 언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함을 설명한다. 법원 업무 절차 과정에 참석해야 하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 단체 및 개인의 경우, 법원 밖의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도 이러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제한적 영어 구사자 및 법원 지정 또는 관리 서비스 제공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언어 서비스가 포함된다.

토마스 E. 페레즈 인권국 장관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영어 사용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 주 법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달로 행정 명령 13166 이 발효된지 10 주년이 됨에따라 고소인, 피해자, 증인과 공공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원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Title VI 및 가두 안전법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이 안내문의 사본을 원하면 www.lep.gov 를 방문하면 된다.

###

10-930

이 편지에 답장하지 마십시오. 문의가 있을 경우, 본 편지에 적힌 연락처 또는 공보실 202-514-2007 로 연락해 주십시오.